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07. 07 (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8. 07. 28(월)
- 다. 상정일자 : 2008. 07. 28(월)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가.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의거 법령제명을 어문규범에 맞는 띄어쓰기로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함.

나. 주요골자

1)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추가

(안 제2조제2항제4호부터 7호까지)

- 변경 : 제109보병연대 1·3대대장 ⇒ 제1670부대 1·3대대장
- 추가 :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국가정보원관계관

2) 분야별 담당 간사 변경(안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예비군담당 간사: 109연대1·3대대 동원장교 ⇒ 예비군담당 간사: 제1670부대 1·3대대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
- 작전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09연대 1·3대대 작전장교 ⇒ 작전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작전 업무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작전 업무 담당과장

- 정보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09연대 기무반장
 ⇒ 정보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정보 업무 담당과장
- 3) 협의회 회의의 구분과 개최시기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4항)
 - 정기회(분기1회), 임시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4) 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통합방위법에 맞게 협의회 구성기준을 정하고, 분야별 담당간사와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및 국가정보원관계관”을 추가하며
- 분야별 담당간사를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 세부조정하고,
- 정기회와 임시회 등 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 결과적으로,

- 『통합방위법시행령』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연월일 : 2008.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제명을 어문규범에 맞는 띄어 쓰기로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추가(안 제2조제2항제4호부터 7호까지)

- 변경 : 제109보병연대 1·3대대장 ⇒ 제1670부대 1·3대대장
- 추가 :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국가정보원관계관

나. 분야별 담당 간사 변경(안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예비군담당 간사: 109연대1·3대대 동원장교 ⇒ 예비군담당 간사: 제1670부대 1·3대대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
- 작전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09연대 1·3대대 작전장교 ⇒ 작전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작전 업무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 업무 담당과장
- 정보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09연대 기무반장 ⇒ 정보담당 간사: 평창경찰서 정보 업무 담당과장

다. 협의회 회의의 구분과 개최시기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4항)

- 정기회(분기1회), 임시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라. 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서 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8.5. 1 ~ 5. 22(21일) 특기사항 없음
-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109보병연대 1·3대대장”을 “제1670부대 1·3대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6. 국가정보원관계관

제2조제3항제3호 중 “제109연대 1·3대대 동원장교”를 “제1670부대 1·3대대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09보병연대 1·3대대 작전장교”를 “평창경찰서 작전 업무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09보병연대 기무반장”을 “평창경찰서 정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제5항 중 “제5호”를 “제7호”로 한다.

제3조 중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통합방위 대비책

4.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 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5.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① 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 제2항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합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⑥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u> <u>등에관한조례</u></p>	<p>제명 <u>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u> <u>등에 관한 조례</u></p>
<p>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 3(내용생략) 4. <u>제109보병연대 1·3대대장</u> 5. <u>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u></p>	<p>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670부대 1·3 대대장</u> 5. <u>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u> 6. <u>국가정보원 관계자</u> 7. <u>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u></p>
<p>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1 ~ 2(내용생략) 3. <u>예비군담당 간사 : 제109연대 1·3</u> <u>대대 동원장교</u> 4. <u>작전담당 간사 : 평창경찰서 정보보안</u> <u>과장, 제109보병연대 1·3대대 작전</u> <u>장교</u> 5. <u>정보담당 간사 : 평창경찰서 정보</u> <u>보안과장, 제109보병연대 기무반장</u></p>	<p>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1 ~ 2(내용생략) 3. <u>예비군담당 간사 : 제1670부대 1·3</u> <u>대대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u> 4. <u>작전담당 간사 : 평창경찰서 작전</u> <u>업무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u> <u>작전 업무 담당과장</u> 5. <u>정보담당 간사 : 평창경찰서 정보</u> <u>업무 담당과장</u></p>
<p><신설></p>	<p>④ <u>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u> <u>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u> <u>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 회의</u> <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u> <u>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④ 제2항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⑤ 제2항제7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제3조(협의회 심의 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2(내용생략)</p> <p>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p>	<p>제3조(협의회 심의 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2(현행과 같음)</p> <p>3. <u>통합방위 대비책</u></p> <p>4. <u>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u></p> <p>가. <u>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u></p> <p>나. <u>통합방위 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u></p> <p>5. <u>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u></p> <p>가. <u>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사항</u></p> <p>나. <u>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u></p> <p>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